

## 성능인증 대상제품

1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,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
2.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
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
4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
5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재활용(GR)마크를 획득한 제품
6. 「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(R)을 받은 제품
7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 및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3에 따른 1등급 품질인증제품(GS)
8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
9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
10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

11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(NEP)으로 인증받은 제품
12. 신기술·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(NET)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
13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(KS)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
14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·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
15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
16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
17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융·복합 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18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3조 및 24조, 동법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
19.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5호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(기획재정부고시 제2010-33호)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'개발선정품'으로 지정된 제품
20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